

DDA 2008년 5월 농업협상*

신유선

2차 수정안은 민감품목 개수 및 TRQ 증량수준, 특별품목 개수, 보조감축률 등 1차 수정안의 주요 내용 대부분을 유지하며, S&D 규정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5월 19일 팔코너(Falconer) 농업협상그룹의장은 동시협상 이전에 농업분야 논의를 보다 진전시키기 위해 2008년 2월 세부원칙(Modalities)¹⁾ 수정안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세부원칙 2차 수정안을 배포하였다. 이번 수정안은 3월 중순 제시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그동안 농산물 예외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회원국간 대립으로 2개월 가량 지연되었다.

2차 수정안은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²⁾ 개수 및 TRQ³⁾ 증량수준, 특별품목(Special Product, SP)⁴⁾ 개수, 보조감축률 등 1차 수정안의 주요 내용 대부분을 유지하며, 개도국 우대(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D)⁵⁾ 규정을 추가하는 등 일부

* 본 내용은 국내외 DDA 관련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유선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shinys@krei.re.kr 02-3299-4287)

- 1) 세부원칙은 관세와 보조금을 감축하는 폭, 감축기간 등 구체적 수치를 담은 문서인데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국별로 세부원칙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적은 문서 즉, 이행계획서(Schedule)를 WTO에 제출한다. 이행계획서가 세부원칙에 따라 잘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WTO 회원국들이 검증하고 검증이 끝나면 DDA 협상이 종결된다.
- 2) 민감품목은 관세감축을 덜 할 수 있다. 다만 대가로 수입쿼터(TRQ)를 주어야 한다. 민감품목의 개수는 국별로 전체 세 번(tariff lines)의 5% 내외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감품목의 대우 즉, 관세를 얼마나 적게 감축하고 TRQ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는 DDA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 3) 수입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정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그 물량을 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콩에 대해 100톤까지는 5%p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100톤이 넘는 물량은 120%p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5%p의 관세를 쿼터내 관세(in-quota tariff)라 하고, 120%p의 관세를 쿼터밖관세(out-quota tariff)라고 한다.
- 4) 개도국들은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의 필요를 감안하여 특별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품목 개수와 대우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선진국, 농산물 수출개도국들과 이를 가능한 확대하려는 농산물 수입 개도국 간 입장차가 크다.

내용을 수정하고 최근의 진전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주장해 온 직접적인 관세상한(Tariff Capping)⁶⁾ 배제, 일부 특별품목의 관세감축면제 인정, 민감품목의 세면별 지정방식(partial designation), 감축대상보조(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⁷⁾의 블루박스(Blue Box)⁸⁾ 전환시 신축성 등은 유지되었다.

핵심 관심사항인 관세상한의 보상방안 및 민감품목 등에 있어 개도국 우대 규정(S&D) 도입을 명확히 한 점 등은 긍정적이나, 우리에게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 2차 세부원칙 수정안 배포를 계기로 연내 최종 타결 모색을 위한 DDA 협상⁹⁾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접근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민감한데, 특히 이 중에서도 관세상한, 특별품목(SP), 민감품목이 주요 쟁점이다.

1. 시장접근 분야

관세감축(Tariff Reduction)

팔코너 의장은 그간 시사해 왔던 것처럼 최상위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 대해 <표 1>과 같이 감축율(Reduction Rate)¹⁰⁾을 제시하였다. 특이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상위 구간에 대해서는 무역왜곡보조총액(Overall Trade Distorting Support, OTDS)¹¹⁾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여전히 []¹²⁾로 남겨두었으므로

- 5) DDA 협상에서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이 작고 이행기간도 길다. UR에서 개도국은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이 선진국의 2/3 수준이었고 이행기간도 개도국은 10년, 선진국은 6년이었다. DDA 협상에서는 개도국의 이행기간은 8년, 선진국은 5년이다.
- 6) 관세상한은 일정한 수준을 넘는 관세는 무조건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 내리자는 개념으로 미국은 관세상한 75%p, EU와 G20은 관세상한 100%p를 제안하였고, G10과 여타 일부 주요국들만 관세상한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7) DDA 협상에서는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minimis), 블루박스를 묶어서 무역왜곡보조총액(Overall Trade Distorting Support, OTDS)이라고 하기로 했으며, AMS, De-minimis, 블루박스 각각도 감축해야 하고 사용상 제한이 따르며, 이를 모두 더한 무역왜곡보조총액(OTDS)도 감축해야 한다. 아파트에 비유하면, 아파트의 전체 평 수(OTDS)를 줄이고 각 방(AMS, De-minimis, Blue Box)의 크기도 줄여야 하며, 더욱이 각 방도 멋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제약이 따르게 된다. 즉, 국내 보조금 규모를 줄이고 품목별로 줄 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도 도입하는 등 각종 제약을 도입하자는 것이 협상의 전반적인 방향이다.
- 8) 단순히 보면 본질적으로는 AMS와 같은 보조금이다. 그러나 UR 협상 과정에서 주요국간 타협의 산물로 탄생했는데, 생산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대신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보조금이다. 이것이 기존의 블루박스(old blue box)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블루박스의 사용 실적이 없다.
- 9) 중동지역에 있는 '카타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도하(Doha)'인데, 2001년 11월 전세계 장관들이 '도하'에 모여서 무역자유화협상을 하기로 하고 그 이름을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라고 하였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도하개발의제'인데 협상에서 개도국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 10) 관세를 감축하는 정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200%p에 관세감축율이 50%를 적용하면 감축후 관세는 100%p가 된다. 극단적인 경우로 관세감축률이 100%이면 모든 관세는 감축 후에는 0%p가 된다.
- 11) DDA 협상에서는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minimis), 블루박스(Blue Box)를 묶어서 OTDS 이라고 하기로 했다. AMS, De-minimis, 블루박스 각각도 감축해야 하고 사용상 제한이 따르며, 이를 모두 합한 OTDS도 감축해야 한다. 아파트에 비유하면 아파트의 전체 평 수

선진국의 최소 평균감축율은 54%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민감품목, 열대작물 및 경사관세 감축결과를 반영토록 한 것으로 선진국에 대한 관세감축 의무를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이에 대한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최소 평균감축율은 54%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민감품목, 열대작물 (Tropical Product)¹³⁾ 및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¹⁴⁾ 감축결과를 반영토록 한 것으로 선진국에 대한 관세감축 의무를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1 2차 세부원칙 수정안의 내용 : 관세감축

1차 수정안(2008년 2월)					2차 수정안(2008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감축 대상품목은 양허표에 기재된 쿼터밖 관세 ('all final bound tariff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VEs 리스트를 모델리티에 부속서로 첨부할 것을 명시 ○ 선·개도국 구간경계 및 감축률은 작업문서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기간은 선진국 5년, 개도국 8년으로 각각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좌동 : 기존 틀 유지 				
구분	선진국		개도국		구분	선진국		개도국	
	구간경계	감축율	구간경계	감축율		구간경계	감축율	구간경계	감축율
1구간	0~20%	[48~52%]	0~30%	[32~35%]	1구간	0~20%	50%	0~30%	33.3%
2구간	20~50%	[55~60%]	30~80%	[37~40%]	2구간	20~50%	57%	30~80%	38.0%
3구간	50~75%	[62~65%]	80~130%	[41~43%]	3구간	50~75%	64%	80~130%	42.7%
4구간	75%이상	[66~73%]	130%이상	[44~49%]	4구간	75%이상	[66~73%]	130%이상	[44~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의 최소 평균감축율을 [54%]로 하되, 구간 감축공식(민감품목 감축 포함) 적용시 감축율이 이보다 낮을 때는 추가 감축의무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대작물 및 경사관세 감축 결과는 반영치 않되, 동 감축 결과가 2.5 AV 포인트 이상의 추가 감축을 인상을 가져오는 경우는 반영 ○ 개도국의 최대 평균감축율이 [36%]이하가 되도록 감축율 축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내용중 [40%] 옵션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의 평균감축율을 최소 54%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수치는 열대작물 및 경사관세 감축 결과를 반영하는 수치가 되도록 명시하여 선진국 의무 완화 ○ 개도국의 평균감축율을 최대 36%이하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수치에는 민감품목도 포함하는 것임을 추가 - 만약 상기에 의한 관세 감축이 36%이상일 경우, 36%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는 여지 유지 				

(OTDS)를 줄이고 각 방(AMS, De-minimis, 블루박스)의 크기도 줄여야 하며, 더욱이 각 방도 멋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제약이 따르게 된다. 즉, 국내 보조금 규모를 줄이고 품목 별로 줄 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도 도입하는 등 각종 제약을 도입하자는 것이 협상의 전반적인 방향이다.

- 12) DDA 협상에서는 회원국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 를 없애고, 합의가 덜 이루어진 부분은 [] 로 표시하였다. 즉, 협상의 목표는 [] 의 수치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2008년 2월 1차 세부원칙수정안에서 [] 의 개수는 171개에서 5월에 배포된 2차 수정안에서는 34개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 13) DDA 협상에서 열대작물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열대작물에 대한 관세를 많이 깎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관건은 열대작물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인데 쉬운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 14) 농산물의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현상인데 농산물 가공업을 많이 보호하는 선진국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DDA 협상에서는 가공도가 높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재료 농산물에 비해 관세를 좀 더 감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표 1 계속)

1차 수정안(2008년 2월)	2차 수정안(2008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RAM(신규가입국)¹⁾에 대한 신축성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구간별로 [7.5] AV 포인트만큼 조정가능. 10% 이하 양허관세는 의무면제 - 최근가입국 및 소규모취약 RAM은 의무면제. 다른 RAM은 가입공약 이행 종료 1년후 감축의무 이행 개시 - 개도국보다 2년 더 긴 이행기간 인정 o SVE(소규모취약경제)²⁾는 감축율 적용후 [10]%p 추가를 통한 조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내용중 평균감축율 수치(24%) 및 SP로 인한 조정할 수 있게 한 조항 등을 SP 조항에 옵션으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구간별로 10% AV 포인트만큼 조정가능. 10% 이하 양허관세는 의무면제 - 좌동 - 좌동 o 좌동 (10% 수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SVE의 범위를 확대하여 ceiling binding and homogenously low binding countries, SP 감축율을 활용 하는 국가도 포함

주 1) 신규가입국(Recently Acceded Members)은 WTO에 새로 가입한 국가들로 이들 국가들은 가입과정에서 관세와 보조금을 많이 깎았기 때문에 DDA 협상에서 관세와 보조금 감축을 적게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감축폭은 협상중이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가입국으로 분류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으나 DDA 협상이 출범한 2001년 11월이 기준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2) 소규모취약국가(Small and Vulnerable Economies)는 DDA 협상에서 관세와 보조금을 덜 감축할 수 있는 혜택을 갖는다.

관세상한(Tariff Capping)

관세상한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2차 수정안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다만 고관세 품목 유지에 대한 쿼터 제공 보상 방안은 1차 수정안의 기본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감축후 관세가 100%를 초과하는 세번(Tariff Line, TL)¹⁵⁾수가 4%를 초과할 경우는 전체 민감품목에 대해 TRQ를 0.5% 만큼 추가 증량해야 하며, 개도국의 경우는 150% 초과 세 번수가 5.3%를 초과할 경우 [0.33] % 추가 증량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00%(선진국 기준시) 및 150%(개도국 기준시) 이상 세 번수는 각각 7.3~8.4% 및 7.2~8.3%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TRQ 증량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

개도국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을 2개 신설하였는데, 이는 개도국에게 유리한 측면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2개 옵션을 선별적으로 품목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모든 품목에게 동일한 옵션을 활용해야 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명료화시킬 필요가 있다.

감축후 관세가 100%를 초과하는 세번수가 4%를 초과할 경우는 전체 민감품목에 대해 TRQ를 0.5% 만큼 추가 증량하고, 개도국은 150% 초과 세번수가 5.3%를 초과할 경우 [0.33] % 추가 증량해야 한다.

민감품목 개수는 전체 세 번 (무세 세번 제외 문구 삭제)의 4~6%로 기존 수정안과 수치가 동일 (개도국은 5.3~8%)하다.

15) 세번이란 관세를 부과하는 기본단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의 경우 쌀이라는 한 가지 품목에는 16개 정도의 세번이 있다.

TRQ 증량수준은 deviation에 따라 소비량의 3~6% 수준으로 기존 수정안과 동일하나, 개도국에 대해서는 TRQ 증량 외 이행기간 조정 등 대안을 추가하여 선택가능토록 규정하였다.

TRQ증량 이행기간 2년으로 이행첫날 총 증량분의 1/3만큼 증량하고 매 12개월마다 1/3씩 추가 증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행초기 부담이 다소 증가하였다.

표 2 2차 세부원칙 수정안의 내용: 민감품목

1차 수정안(2008년 2월)	2차 수정안(2008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민감품목 숫자([4] [6]%), 산정 base([dutiab] tariff line), 개도국 우대(선진국의 1/3 추가) 등은 작업문서 내용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상위 구간에 전체품목의 30% 이상이 집중된 경우 [6][8]% 지정 - HS 6단위 양허로 인해 불공평한 효과가 있을 경우 [6][8]% 지정 o 단, 상기와 같이 추가 세번을 인정받는 경우의 소비량 확대폭을 기존 [4.5] [5.5]에서 ([4] [6] + [0.5] [1])%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상한 대안 조항의 threshold를 5%→4%로 하향 조정하고, 증량대상을 전체 민감품목으로 명시(trigger는 100%) - import penetration 관련 10% 및 30% 구간의 TRQ증량을 deviation에 따라 세분화 o 이의 deviation에 따른 TRQ 증량폭 및 조정폭, 개도국 우대(선진국의 2/3 증량) 등은 작업문서 내용 유지 o 쿼터증량을 양허케하고, 이행 첫날 최소 1% 추가 증량을 시작하여 매 12개월마다 1%씩 추가 증량 o 국내소비량 산정방안관련 부속서(Annex C) 내용도 대체로 작업문서 내용에 준하여 두 가지 방법을 아래와 같이 열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품목 단위 소비량 기준 TRQ 증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 범위내 일부 세번만을 민감품목으로 지정 하더라도 품목 단위 소비량을 기준으로 TRQ 증량 산정 - FAO, OECD의 국제 데이터를 우선 사용하고 국제 데이터가 없는 경우 국내 데이터 사용, 종자용·사료용 등을 모두 포함한 balance sheet을 사용하여 소비량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단, 표현을 "2% 추가"로 변경) - 좌동 (단, 표현을 "2% 추가"로 변경) o 상기와 같이 추가 세번을 인정받는 경우의 소비량 추가 확대폭을 기존의 [0.5][1]에서 "0.5%추가"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상한 대안 조항의 threshold를 TL의 4%로 유지하고, trigger를 100%로 유지 (dutiab을 삭제하여 범위 확대) - 개도국이 상기 관세상한 대안 조항을 사용코자 할 경우, 적용되는 entitlement는 선진국의 4/3이며, trigger는 150%가 적용될 것임을 신규 명시 - 좌동. 다만, 수치를 조정하여 10% import penetration의 경우 0.5%p 감축, 30%일 경우 1%p 감축으로 설정 o 좌동 (단, 표현을 일부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우대 조항을 강화, full cut+longer period(3년), shorter dev+2년 단축(이 경우, formula cut의 3/4 적용 및 TRQ 확충 없음. 단, SeP 한도의 2/3를 조월하여 사용 금지) o 쿼터증량을 양허케하고, 이행 첫날 추가 소비량의 최소 1/3을 추가증량하고 매 12개월마다 1/3씩 추가 증량 o 기존의 2가지 옵션을 유지하되, 기존의 두 번째 옵션을 대폭 수정, G-6측이 합의한 partial designation 방식을 삽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좌동

(표 2 계속)

1차 수정안(2008년 2월)	2차 수정안(2008년 5월)
<p>② 세번 단위 소비량 기준 TRQ 증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번별 국내 소비량 데이터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사용하고 소비량 데이터가 없는 경우 proxy 사용 · Step 1-4에 따라 관련 세번의 소비량을 산정 · 6단위 통계를 향후 합의되는 'data template'에 따라 제출 - [수입량이 작은 경우 품목전체(attachment)에 대해 global safety net([1] [3]%) [및]proportional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TRQ 증량 수준 중 큰 것을 적용] - 회원국은 세부원칙 타결시 계산방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현재 양허세번을 기준으로 민감품목을 지정하여야 하고, 소비량 산출을 위한 기준 년도는 '03-'05년 - TRQ 양허 방식 관련 두 가지 방안을 제시 ([single tariff quota], [최대 2개로 TRQ 구분 양허]) <p>o 다만, 기존 내용에 비해 추가 또는 수정된 부분도 존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번간 차이가 미미할 경우에는 동일 세번으로 간주 - in quota/out-quota의 운용시 별개의 세번이 있을 경우 단일 세번으로 운용할 것을 의무화 (treated as) - 국내소비량 산정방식(template와 attachment)을 모델러터와 불가결의 일체로 간주하고, 동 방식을 첨부시킨 품목만을 민감품목으로 인정 - 새로운 쿼터와 기존 쿼터를 분리, 기재 	<p>② 문안 대폭 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oor minimum access을 [1~3]로 설정 (기존의 대안 삭제) - 여타 내용은 G-6측이 합의한 partial designation 방식의 내용을 포함 <p>o 좌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좌동 - 좌동 - 삭제

특별품목(Special Product, SP)

zero cut¹⁷⁾ 문구에 대해 괄호()가 한 개 풀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3개의 관세감축 범주가 2개로 축소되면서 평균수치가 도입된 것은 신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현행 텍스트에서는 SP의 수치를 8%로 한정하고 있어 그동안 G33¹⁸⁾이 요구해 온 6%-6%-8%에는 크게 미달하며, zero cut에 대한 확정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2개 범주의 관세 감축율이 8%, 12%가 아닌 12%, 20%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협상에서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등이 제안한 negative indicator¹⁶⁾가 도입되지 않은 점은 긍정적이거나 SP 지정 및 대우에 관한 G33 입장을 고려할 때 2월 세부원칙안보다 전반적으로 불리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16)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 등은 피소감축율을 적용하는 SP로의 지정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17) 관세를 0%로 감축하는 것을 말한다. 개도국들은 특별품목의 zero cut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18) G-33은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필리핀 등 개도국 SP를 옹호하는 나라들의 모임으로 개도국 특별품목 개수를 충분하게 많이 인정하고 관세감축을 적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이다.

표 3 2차 세부원칙 수정안의 내용: 특별품목

1차 수정안(2008년 2월)	2차 수정안(2008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Indicator에 따라 SP를 지정하되, 최소 8%, 최대 [12] [20]% 지정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중 [6]% 세번에는 [8][15]% 감축율, 나머지 [6]% 세번에는 [12] [25]% 감축율 적용. [나머지 8%][zero] 세번에 대해서는 감축면제 - 최소 SP수치에 대해서는 indicator를 비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G33 indicator 리스트를 Annex F로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최소 8%를 유지하면서 20%까지를 []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zero cut의 경우 이중 []을 풀고 [0 ~ 40% of SP]로 변경 - 기존의 3개 범주를 2개 범주로 변경하며 zero cut을 제외한 잔여 SP의 관세 감축율을 12~20%로 추진토록 설정하고, overall average cut 수치(15%) 신설 - 최소 SP수치에 대해서는 indicator를 비적용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문구를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Indicator에 따르더라도 최소 수치의 SP 이상을 지정치 못하는 국가는 사용치 않은 민감품목을 SP로 전환 가능(transfer mechani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경우 최대 허용치가 [12][20]%를 넘어설 수 없고, 감축면제 대상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transfer mechanism 문구 정비하여 아래 2개 조건 하에서만 가능토록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SeP entitlement의 1/3까지 가능 - 전환되는 entitlement에 대해서는 20% cut 적용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SVE의 경우 (1) 조정되는 관세감축율 및 상기 SP 방식을 적용하거나, (2) 24% 평균감축율을 넘어서는 감축율에 대해 SP지정으로 조정. 이 경우 최소감축율을 적용치 않고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좌동 (문구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RAM의 경우 indicator 비적용 threshold를 [2]% 높게, 총 SP숫자를 [1]% 많게, 감축율은 [2]% 작게 설정. [추가로 1% 세번에 대해 감축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indicator 비적용 threshold를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1%p 추가"를 "10%추가"로 소폭 조정 - zero cut 관련 []을 삭제하는 대신, SP 대비 2%p 추가 감소된 수치를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

가격기준 SSM의 경우 당해연도 수입물량이 분명히 감소하고 있거나 수입량이 경미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동할 수 없다.

개도국 긴급수입관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¹⁹⁾

개도국은 수입량이 일정물량 이상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격기준 SSM의 경우 당해연도 수입물량이 분명히 감소하고 있거나 수입량이 경미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동할 수 없다. 발동 대상품목의 제한은 없으나 12개월 동안 [3-8] 품목²⁰⁾까지만 발동할 수 있으며, 물량기준 SSM과 가격기준 SSM의 동시발동 또는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SSG)²¹⁾ 등 다른 긴급수입제한 조치와 동시 발동할 수 없다.

19) DDA 협상에서 개도국을 위한 특별긴급관세를 만들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협상중인데 기존의 SSG와 유사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 HS 6단위 1개를 1개 품목으로 정의하고 1개 품목당 세번은 최대[4-8개]이다.

21) UR 협상 결과 농산물에만 적용하는 특별긴급관세 제도가 생겼다.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국제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자동적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를 '구제조치(Remedy)'라고 한다. SSG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UR 협상 결과 국별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농산물을 이행계획서에 표시해 두었다.

물량기준 SSM은 최대 12개월까지 발동하되 계절성 품목은 최대 6개월까지만 발동가능하고 어떤 품목도 2회 초과하여 연속발동은 할 수 없다. 물량기준 SSM이 발동 중인 경우에 수입된 물량도 다음번 물량기준 SSM 발동 기준 물량 계산에 산입하되, 만약 그 산입으로 인하여 당초 발동기준 물량보다 낮아지면 당초 발동기준 물량을 적용해야 한다.

표 4 2차 세부원칙 수정안의 내용: SSM

기준	발동기준	구제조치(추가관세: 실행관세에 부과)	
물량 기준 SSM	1안 (G33)	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05%초과 110%이하	양허관세의 50% 또는 40%p 중 높은 것
		110%초과 130%이하	양허관세의 75% 또는 50%p 중 높은 것
		130%초과	양허관세의 100% 또는 60%p 중 높은 것
	2안 (수출국)	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30%초과 135%이하	양허관세의 20% 또는 20%p 중 낮은 것 한도 : DDA 양허관세
		135%초과 155%이하	양허관세의 25% 또는 25%p 중 낮은 것 한도 : UR 양허관세와 DDA 양허관세의 중간
		155% 초과	양허관세의 30% 또는 30%p 중 낮은 것 한도 : UR 양허관세
가격기준 SSM	최근 3개년 평균가격의 [70% 이하로 하락시	발동가격과 수입가격 차이[의 50%] [한도: UR 양허관세]	

긴급수입관세(Special Safeguard, SSG)

선진국의 경우 SSG를 모두 철폐하거나 전체 세번의 1.5%로 축소하는 방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하였다. 개도국의 경우 발동기준 및 구제조치와 같은 운용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 품목을 전체 세번의 3%로 축소하는 방안을 [] 로 규정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SSG를 모두 철폐하거나 전체 세번의 1.5%로 축소하는 방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하였다.

TRQ 관리방안²²⁾

수입국은 다음과 같은 쿼터 미소진(Underfill)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표 5 2차 세부원칙 수정안의 내용: TRQ 관리

시기	해당 조치
(1단계) 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첫째, 수입국이 소진율을 통보하지 않았거나 소진율이 지정된 비율이하로 하락시, 수출국은 TRQ 실행과 관련하여 농업위원회에 문제제기 가능(메카니즘 발동) ■ 수입국은 시장상황, TRQ관리방식, 미소진 야기 요소가 있는지에 대하여 수출국들을 이해시켜야 함

1차 수정안과 비교하여 절차적 측면 규정은 변동 없으며, 쿼터 미소진과 관련하여 수입국들의 의무를 일부 완화하였다.

²²⁾ 각국별로 수입쿼터를 허용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고 있다. 예컨대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대가로 국내산 농산물을 사라는 조건을 붙이기도 한다. 이렇게 수입쿼터를 운영하는 것을 수입쿼터 관리 즉 TRQ Administration이라고 한다. DDA 협상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표 5 계속)

시기	해당 조치	
(2단계) 2년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커니즘 발동 이후, 연속 2년 동안 지정된 비율이하로 소진율이 하락하거나 어떠한 통보도 없었다면, TRQ관리방식 수정 요구 가능 ■ 수입국들은 요구된 특별한 조치를 취하거나, 소진율을 향상시킬 효율적인 다른 조치 필요 	
	매커니즘 발동 이후 상황	
	i) 소진율이 지정된 비율이상으로 상승시	‘해결된’ 것으로 보아 모니터링 불필요
	ii) 낮은 소진율이 시장상황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시	수입관리 방식에 대한 추가 수정 요구 가능
(3단계)3 년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세 번째해 이후, 아래의 경우 수입국들은 선착순과 비조건적 허가 중 하나로 수입관리방식 변경(최소 2년간 유지) (a) 연속 3년간 소진율이 지정된 비율 이하로 유지 (b) 소진율이 직전 3년동안의 소진율보다 지정된 최소수량 비율만큼 증가하지 않을 경우 (c) 미소진 사유에 대한 논의가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경우 (d) 수출국이 미소진 매커니즘의 3단계를 시작할 것을 희망시 	

2. 국내보조 분야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감축기간 [] 방식과 생산액 데이터를 모델리티에 첨부하도록 한 것은 2차 수정안의 두드러진 점이다. 3구간의 하위 수치를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는 OTDS한도(56,464억 원)에서 선진국 적용(50%)시 28,232억 원, 개도국 적용시(33.3%) 55,119억 원으로 감축이 추산되므로 실제 OTDS 지급액에 비해 다소 여유가 있다.

표 6 2차 세부원칙 수정안의 내용: OTDS

1차 수정안(2008년 2월)			2차 수정안(2008년 5월)		
o 감축구간 및 감축율은 작업문서 내용과 동일			o [] 표현방식을 [75][85]에서 [(75)(85)]방식으로 변경		
구간	감축률		o 좌동		
	선진국	개도국			
600억불 이상	[75][85]%	2/3 감축			
100~600억불	[66][73]%				
100억불 이하	[50][60]%				
o 이행기간 관련, 이행초년도 감축부담을 강화하고 구체적 기간 제시(선진국 5년간 6번, 개도국 8년간 9번)하며 국가별로 차등 - EU-미일 : 이행 첫날 총 OTDS의 1/3 감축, 나머지 5년 균등 감축					

감축구간, 감축율 및 이행기간 등 주요 내용은 기존 문서와 동일하나, 감축을 관련 기존에는 두 개의 괄호를 하나로 처리하였다. 한편, 이번 문서에서는 OTDS감축 계산을 위한 기초 자료인 생산액 데이터를 세부원칙에 첨부하도록 규정하였다.

(표 6 계속)

1차 수정안(2008년 2월)	2차 수정안(2008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머지 선진국 : 이행 첫날 총 OTDS의 25% 감축, 나머지 5년 균등 감축 - 개도국 : 이행 첫날 총 OTDS의 20% 감축, 나머지 8년 균등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SVEs와 소규모취약 RAMs는 감축의무 면제 - 최근 신규가입국 및 소규모취약 RAM : OTDS, AMS, de minimis 감축의무 면제 - 기타 신규가입국 : AMS의 경우 선진국 감축율 2/3적용 	o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LDC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은 OTDS 산정기준, 연간 및 최종 OTDS 한도를 금액단위로 양허표에 기재. 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은 산정기준만 기재 	o 좌동
o (신설)	o OTDS를 사용하는 국가는 생산액 데이터를 모델리티에 첨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출해야 함

감축대상보조(AMS)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개도국은 AMS 계산시 고려되며, 선진국의 품목별 AMS를 모델리티에 첨부하는 내용 등이 2차 수정안의 특이한 사항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AMS 한도(14,900억 원) 선진국 적용(45%)시 8,195억 원, 개도국 적용(30%)시 10,430억 원으로 감축액이 추산된다.

최소어용보조(De Minimis)²³⁾

보조금 감축율의 표현방식을 [50][60%]에서 [(50)(60)]방식으로 변경했을 뿐 달라진 내용은 없다. 따라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De-minimis수준 이하로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에도 이 보조액을 AMS로 산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7 최소허용보조 지급실적 및 지급한도 비교

구분(억 원)	지급 실적		지급 한도			
	UR 평균 ('95-'04)	최근 평균 ('03-'04)	선진국기준시		개도국 기준시	
			이행초	이행말	이행초	이행말
품목불특정보조	1.3	1.2	5	2	10	6
품목특정보조						

²³⁾ 최소허용보조는 AMS와 성격이 비슷하다. 다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UR 협상 결과 감축의무가 면제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농업생산액의 5%, 개도국의 경우 10% 한도 이내이면 최소허용보조이고 감축이 면제되었다. 그러나 DDA 협상에서는 최소허용보조도 감축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 AMS 지급실적 중 쌀에 대한 보조금이 대부분('04년의 경우 92%)을 차지하는 상황이나 '05년부터 양정제도가 개편, 쌀 수매제가 폐지되고 쌀소득보전 직불제 도입에 따라 AMS한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계속)

구분(억 원)	지급 실적		지급 한도			
	UR 평균 (’95-’04)	최근 평균 (’03-’04)	선진국기준시		개도국 기준시	
			이행초	이행말	이행초	이행말
소	2.95	1.50	5	2	10	6
돼지	0.34	0.01	5	2	10	6
닭	0.01	0.00	5	2	10	6
맥주보리	1.28	0.55	5	2	10	6
감자	0.04	0.00	5	2	10	6
고구마	0.03	0.02	5	2	10	6
마늘	1.82	1.95	5	2	10	6
양파	1.63	2.17	5	2	10	6
당근	0.76	2.44	5	2	10	6
고추	0.24	0.56	5	2	10	6
과	0.12	0.26	5	2	10	6
기타채소류	0.26	0.32	5	2	10	6
인삼	1.55	0.24	5	2	10	6
밤	1.15	0.43	5	2	10	6
배	0.82	1.97	5	2	10	6
참다래	0.79	0.00	5	2	10	6
사과	0.66	1.27	5	2	10	6
감귤	0.20	0.86	5	2	10	6
복숭아	0.06	0.00	5	2	10	6
포도	0.04	0.00	5	2	10	6
감	0.14	0.52	5	2	10	6
(평균)	0.71	0.72	5.00	2.00	10.00	6.00

블루박스(Blue Box)

품목별 블루박스 한도를 세부원칙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 품목에 대해 어떤 보조 형태를 선택할 것인가는 이행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양허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1차 수정안에서는 공란으로 있던 Annex A에 첨부된 미국의 블루박스 내용 및 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쌀의 품목특정 AMS를 블루박스로 전환할 경우 블루박스 한도(1995-2000년 총생산액의 5%) 이상의 한도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린박스(Green Box)²⁴⁾

G-10²⁵⁾의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

24) 일반서비스,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 자연재해 구호지원 등의 보조금은 감축의무가 없으며, 이를 허용보조라고 한다.

25) G10은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순수입국 모임으로 농산물 관세를 지나치게 많이 감축하는데 반대하는 그룹이다.

표 8 2차 세부원칙 수정안의 내용: 그린박스

1차 수정안(2008년 2월)	2차 수정안(2008년 5월)
<p>o (신설)</p> <p>o 부속서 6, 11, 13항에 대한 고정·불변 기준(fixed and unchanging base level) 관련, 예외적 업데이트가 인정되는 조건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생산자의 기대와 생산계획에 영향이 없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생산자의 기대와 생산계획에 영향이 없고 이에 따라 지급자격(entitlement)도 부속서 1항에 상반되는 방식으로 생산을 야기하지 않을 경우]로 수정</p>	<p>o 개도국의 public stockholding 관련 저소득층지원이나 빈곤자원보유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매(acquisition)은 AMS 산업에서 제외</p> <p>o 예외적 업데이트 인정조건을 명확히 함 - 생산자의 기대와 생산계획에 영향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1) 업데이트기준기간은 충분히 의미 있는 수년이 지나야 하고, 2) 업데이트기준기간결과는 생산자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이 중립적이거나 지지를 감소하는 조건하에서 가능</p>

3. 수출경쟁 분야

수출보조(Export Subsidy)²⁶⁾

1차 수정안의 내용과 동일하다. 선진국은 2013년까지 수출보조를 철폐하되, 2010년까지 50%, 나머지는 그 후 매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개도국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출보조를 철폐하되, 농업협정 제 9.4조에 따라 수출보조 철폐 후 5년간 마케팅비용, 운송비용 등의 수출보조는 유지 가능하다.

수출신용(Export Credit)²⁷⁾

선진국의 최대상환기간은 이행기간 첫날 또는 2010년 말 중 빨리 도래하는 시기부터 180일을 적용한다. 개도국의 경우는 180일로 하되 3년에 걸쳐 적용한다. 선진국 자생기간(self-financing)은 [4][5]년, 개도국은 50% 연장개도국의 자생기간(self-financing)이 [6] [7.5]년에서 50% 추가 증가한 점이 특기한 사항이다.

수출국영무역기업(Exporting State Trading Enterprise, STE)²⁸⁾

1차 수정안의 내용과 동일하다. 2013년까지 수출국영무역기업의 독점력을 철폐

수출보조와 수출국영무역기업의 내용은 1차 수정안의 내용과 동일하다. 수출신용에서는 개도국의 자생기간이 [6] [7.5]년에서 50% 추가 증가한 점이 특기한 사항이다.

26) 농산물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수출보조금을 2013년까지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27) 농산물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이자 등 금융거래가 필요하다. 과거에 농산물 수출에 조달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 등을 적용했는데, DDA 협상에서는 이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시장금리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방안을 협상중이다.

28)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거대한 수출국영무역기업이 있어 국제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DDA 협상에서는 이들 기업의 독점력을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야 한다. 단, 개도국의 경우, ①국내소비자 가격의 안정과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수출국영무역기업, ② 연속 3년간 해당품목 세계수출의 5% 미만을 차지하는 수출국영무역기업의 독점력은 허용한다.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²⁹⁾과 소규모취약국가(Small and Vulnerable Economies, SVE)들은 상기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독점력이 허용된다.

비긴급상황시 수요 평가내용을 추가하고 현금화 관련하여 일부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 대북 지원문제가 있으나, 이는 내부거래로 보아 WTO 식량원조 규정에 대한 반대 주장을 자제해 온 기존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식량원조(Food Aid)³⁰⁾

모든 식량원조는 무상공여로 제공하며, 재수출은 금지하나 긴급 식량원조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수혜국의 동종 또는 대체 품목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경우 현물원조를 지양하며, 점차적으로 현금원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북지원문제가 있으나, 이는 정치적·인도적 문제로서 WTO 식량원조관련 규정에 대한 이의를 자제해 온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표 9 2차 세부원칙 수정안의 내용: 식량원조

1차 수정안(2008년 2월)	2차 수정안(2008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긴급상황 (Safe 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및 (b) 공히 UN 관련 기구,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의한 수요평가(need assessment)가 필요 - 수요평가 기간은 3개월로 하되, 동 기간동안은 분쟁제기 불가 - 현금화를 금지하되, LDC의 경우 예외 인정 o 비긴급상황(Non-emergency situ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기관에 의한 수요평가, 확인된 수혜대상 한정, 특정 개발 목적 또는 영양상의 이유 적용, 상업적 재처분 금지 o 현금화는 [금지] [LDC 및 NFIDC에 대한 식량원조 이행에 직접 관련된 활동][개도국 수혜국의 식량원조 이행에 관련된 활동, 저소득·자원빈곤에 대한 농업투입재구입 등 예외적인 경우]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UN기구를 Multilateral agency로 변경 o 평가는 객관적이고, 국제기구나 수혜자 국가가 공표하는 증명할 수 있는 빈곤과 굶주림 데이터를 반영 내용 추가 o 현금화대상을 transportation and delivery에서 internal transportation and delivery로 구체화

29) UN이 지정한 가장 가난한 국가들로 2007년 7월 현재 50개국이 최빈개도국이다. DDA 협상에서 최빈개도국들에게 우대를 주기로 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최빈개도국들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수량을 제한하지 말고 관세도 부과하지 말자는 것이다.

30)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재고식량을 덩핑으로 해외시장에 파는 경우가 많다. DDA 협상에서는 이러한 덩핑행위도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협상중이다. 구체적으로 예이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원조해야 한다는 것이 협상의 기본방향이다.

4. 양우 전망 및 일정

최근 2차 세부원칙 수정안이 배포되면서 DDA 농업협상은 더욱 급물살을 타고 있다. 5월 26일 주간부터 2차 수정안을 기초로 주요국간 다자분야 협의를 거친 후, 비농업부문(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³¹⁾간의 동시협상(Horizontal Process) 이전에 보완된 수정안(3차)을 다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인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 등을 중심으로 G10 및 G33 국가가 공조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농림부 보도 자료(www.maf.go.kr)

농림부, 한 번에 끝내는 알기 쉬운 DDA협상용어 50선, 2007.

농림부 해외농업 사이트(www.insidetrade.com)

WTO,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TN/AG/W/4/Rev.2, 19 May 2008

³¹⁾ DDA 협상에서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업이외의 물품 즉, 공산품에 대해서도 협상을 한다. 농업 협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반영하여 농산물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비농산물협상'이라고 한다.